



「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 예금주 본인 요청에 의한 통장 또는 증서 발행 시, 수수료(₩1,000)가 발생합니다.

1. 상품개요 및 특징

상품명	• 정기예금	
상품특징	•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계약당시의 확정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하는 상품	
이자지급시기	☐ 단리 (매월 이자지급)	☐ 복리 (만기 일시지급)

2. 거래조건 등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기준일자 : 2025.08.27

구 분		내 용							
가입대상		• 개인 / 개인사업자 / 법인			가입방법		• 영업점방문 / 인터넷뱅킹 / 모바일뱅킹		
가입금액		• 10만원 이상 ~ 제한 없음			가입기간		• 영업점 : 1개월~24개월 • 비대면채널 : 1개월~36개월		
이자율 (세전, 연이율)	기본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							
		계약기간	1개월	3개월	6개월	12개월	24개월 이상		
		기본이율*	1.30%	2.00%	2.30%	3.10%	2.50%		
	* 기본이율 : 신규일의 일반 정기예금 고시이율 (모든 우대금리 제외)								
	만기 후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							
		1개월 이하	최종회전일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						
1개월 초과		0.1%							
수익률	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)*를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							

구 분	내 용				
만기이자 산출근거 (세전, 연이율)	구 분	월 단위	일 단위		
	단리식	원금×이율/12×월수		원금×이율/365×일수	
	복리식	원금×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	(원금+월복리이자)×이율/365×일수	
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(세전, 연이율)	•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,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				
	가입기간		이율 및 계산방법		
	1개월미만		0.1%		
	1개월이상 ~ 6개월미만		신규시점 약정이율 × 50%		
	6개월이상 ~ 9개월미만		신규시점 약정이율 × 55%		
	9개월이상 ~ 12개월미만		신규시점 약정이율 × 60%		
	12개월이상 ~ 24개월미만		신규시점 약정이율 × 70%		
	24개월 이상		신규시점 약정이율 × 80%		
	※ 가입기간 [1개월 미만]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시점 기본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				
	※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은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이율만 적용합니다.				
세제혜택	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				
	가입대상	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 운동 부상자			
	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				
해지방법	• 만기해지(택1)				
	자동연장	•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• 예금의 만기시점까지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 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함 •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됨			
	자동해지	•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며, 사전에 등록된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자동입금함			
	직접해지	•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직접 해지			
	※ 자동연장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				
	• 일부(분할)해지				
	이용기간	•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	이용조건	• 해지 후 잔액 10만원 이상	
	해지횟수	•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	적용금리	• 중도해지이율 적용	
	기타사항	• 이자지급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. (단, 단리식에서 복리식으로의 변경은 불가)			



구 분	내 용
제한 사항	-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- 질권 설정 : 가능 (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
위법계약 해지권	-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자료열람 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연계, 제휴 서비스	해당사항 없음

3.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**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사 영업점, 고객센터(1600-4902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db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*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**로 **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※ **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**

- ① 본 **예금 상품**을 **계약**하고,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**중도해지**하는 경우, **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**되며, **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**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

☐ 예 / ☐ 아니오 ☞ “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” 항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

- ② 본인은 DB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**를 **제공**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**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**에 대하여 충분히 **설명**을 듣고 **이해**하였음을 **확인**합니다.

고객확인 일자 : 20 . .

(예금주) _____ (서명/인)

(대리인 신청 시 추가 작성) 예금주 _____의 대리인 _____ (서명/인)



◎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